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전문공보담당자 검사 박광현

전화 043-649-4312 / 팩스 043-644-2829

보도자료
2024. 11. 11.(월)

제 목

지역 선후배들로 불법사금융 조직을 구성해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불법대부업자 15명 (5명 구속) 기소
- 연이율 1,000%~55,000% 초고금리 이자 수취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 금지정보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김준선)**은 불법대부업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1. 6.부터 '24. 7.경까지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대규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불법사금융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금일(11. 11.)** 주범인 **총괄관리책(자금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조직원 5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위 불법사금융 조직은 제천·단양·영월 지역 선후배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단기·소액 대출 후 연이율 1,000%~55,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가족·지인들에게도 불법 추심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특히, 금일 구속 기소된 **총괄관리책**은 불법사금융 조직의 정점에서 막대한 불법이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한 주범으로, 그동안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나갔으나,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총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 구속되었음**
-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범죄수익금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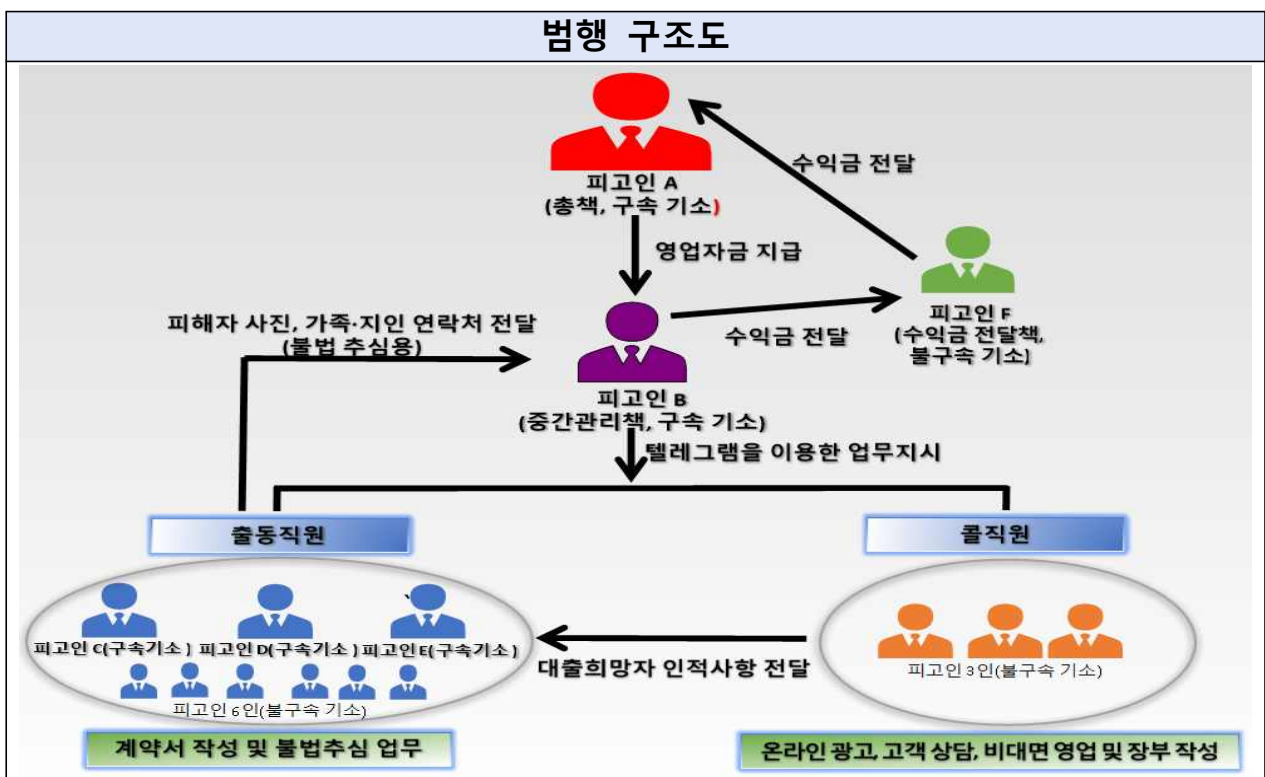
피고인 [15명]

- 피고인 A(31세, 총괄관리책, 구속), B(30세, 중간관리책, 구속), C(30세, 출동직원, 구속), D(28세, 출동직원, 구속), E(27세, 출동직원, 구속)
- 피고인 F(27세, 수익금 전달책, 불구속), 나머지 피고인 9명(직원, 불구속)

2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1. 6.~'24. 7.경 대부업 등록 없이 총 7,570회에 걸쳐 합계 59억 2,643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 7,594만 원을 수취(연이율 1,000% 내지 55,000%) **【대부업법위반】**
- 피고인 B는 상환기간 연장 또는 이자 면제 조건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 수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 D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 **【채권추심법위반】**
- 피고인 F는 무등록 대부업 수익금을 총괄관리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담당 **【대부업법위반방조】**



※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참조

3

주요 수사 경과

- '24. 6. 경북칠곡경찰서 사건 송치 및 이송(대구지검 → 제천시청, 다수 피의자들 주소지 관할)
- '24. 7.~10. 피고인들 주거지 등 압수수색 실시, 공범 9명 인지
※ 현금 약 3억 원, 명품 시계, 대포폰, 영업장부 등 압수
- '24. 10. 2. 피고인 B, C, D, E 구속영장 발부
- '24. 10. 18. 피고인 B, C, D, E 구속 기소, 피고인 5명 불구속 기소
- '24. 10. 24. 피고인 A 구속영장 발부
- '24. 11. 4. 국세청 세무 조사 의뢰
- '24. 11. 6.~8. 피고인들 재산 추징·보전 결정
※ 범무법인 보관금(약 4억 원), 부동산, 차량 등 추징·보전 결정
(고급외제차 매매대금채권 등 추가 추징·보전 청구 예정)
- '24. 11. 11. 피고인 A 구속 기소, 피고인 5명 불구속 기소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다발(불법대부 수익금) 및 대포폰 등



4

수사 결과

① 지역 선후배들을 가담시킨 조직·계획적인 범행

- 총괄관리책 피고인 A는 제천·단양·영월 지역 선후배들을 조직원으로 가담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하부조직으로 독립시켜 자신은 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불법이익을 향유하였음
- 별도의 하부조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책들은 다시 친분이 있는 지역 선후배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이 과정을 거둬하며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다수의 지역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에 가담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 사건 불법사금융 조직에 가담한 피고인들도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한탕주의에 빠져 불법사금융 범죄자로 전락한 것임
- 피고인 A는 다수의 중간관리책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 주는 등의 조력을 통해 공범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게 하는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사실도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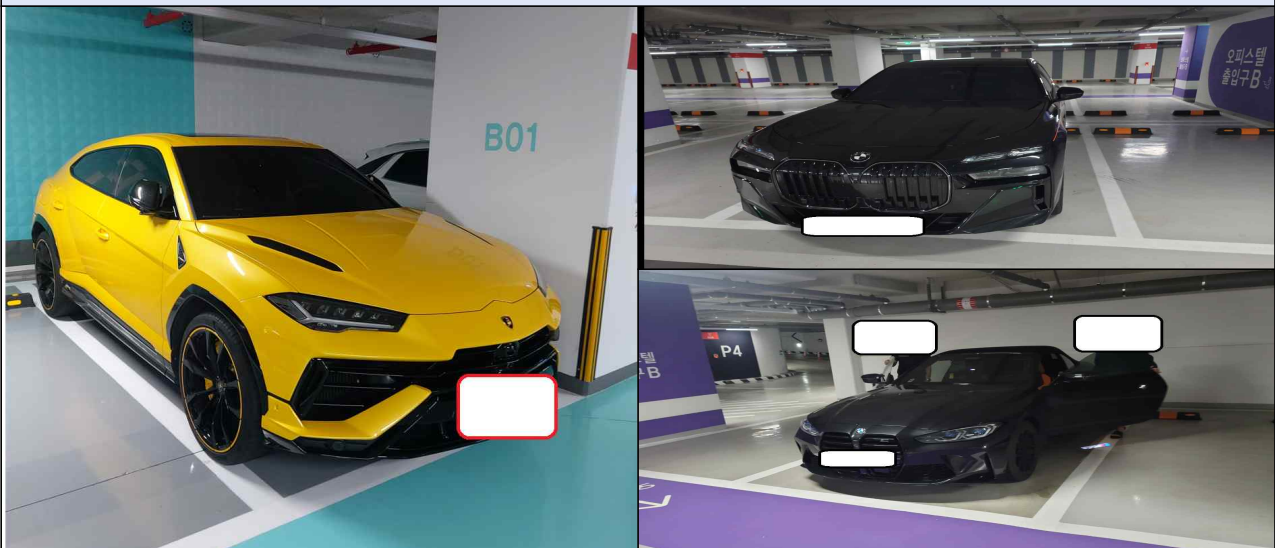
②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초고금리 불법 이익 취득

-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100만 원의 소액을 대부분 다음 일주일 후 50~140만 원을 상환받고, 기일 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하여 폭리를 취하였음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이율 1,000%에서 최대 55,000%의 고리를 상환받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음
- 피해자들이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 탕감이나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았고, 이를 불법사금융 차명계좌로 활용하여 철저히 범행을 은닉하였음
-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들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 가족·지인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확보하였고, 피해자들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욕설 또는 협박을 하거나, 가족·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대리 상환을 독촉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을 진행하였음


③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통한 호화로운 생활 영위

-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은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수취한 것이었으나, 송치 이후 검찰에서 영업장부 압수, 차명계좌 확보 등을 통해 합계 33억 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여 피고인들이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었음
- 피고인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들로부터 착취한 범죄수익금으로 4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명품쇼핑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음

피고인들이 운행한 고급 외제차



5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검찰은 다수의 지역 청년들을 가담시켜 대규모 불법사금융 범죄를 행한 주요 피고인들을 구속해 불법사금융이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였음
- 아울러, 범죄수익 규모를 특정한 후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여 정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검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임 

[별지]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처리 결과
1	A	총괄관리책	· 중간관리책 B에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21. 6.~'24. 7.경 합계 59억 2,643만 원의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합계 33억 7,594만 원 수취 [대부법업위반]	구속기소
2	B	중간관리책	· 총괄관리책 A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해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21. 6.~'24. 7.경 합계 59억 2,643만 원의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합계 33억 7,594만 원 수취 [대부법업위반] · 불법사금융 범칙에 이용할 목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이자 탕감이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다수의 차명계좌를 수집하도록 지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속기소
3	C	출동직원	· 중간관리책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추심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22. 4.~'24. 7.경 합계 46억 8,141만 원의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합계 19억 6,589만 원 수취 [대부법업위반] ·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욕설·협박을 하고, 가족들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등 6회에 걸쳐 불법 추심 진행 [채권추심법위반]	구속기소
4	D	출동직원	· 중간관리책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추심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22. 3.~'24. 7.경 합계 48억 9,581만 원의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합계 21억 8,950만 원 수취 [대부법업위반]	구속기소
5	E	출동직원	· 중간관리책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추심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22. 6.~'24. 7.경 합계 42억 1,761만 원의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합계 15억 4,810만 원 수취 [대부법업위반]	구속기소
6	F	수익금전달책	· 총괄관리책 A의 지시를 받아 중간관리책 B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익금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 [대부법업위반방조]	불구속기소
7	나머지 9명	출동직원 6명 콜직원 3명	· (출동직원 6명) 중간관리책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추심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초과 이자 수취에 가담 [대부법업위반] · (콜직원 3명) B의 지시를 받아 대부중개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한 후 인적사항을 출동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초과 이자 수취에 가담 [대부법업위반]	불구속기소